

## 관세법개론

### 1. 관세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 ② “차량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③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 ④ “내항기”(內航機)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 ⑤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2. 관세법령상 관세의 납부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신고납부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0일 이내이다.
- ② 부과고지에 따른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다.
- ③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일부터 10일 이내이다.
- ④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없다.
- ⑤ 관세청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수입신고기간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3.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이를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
- ② 세관장은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공탁할 수 없다.
- ③ 세관장은 관세의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④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 ⑤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는 관세법에 따라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4.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 납세의무자가 발행한 보험증명서                      ② 보험에 가입된 등기된 건물
- ③ 납세보증보험증권    ④ 지방채
- ⑤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5. 관세법령상 시효의 중단 및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
- ②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③ 납세고지는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된다.
- ④ 통고처분은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된다.
- ⑤ 교부청구는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6. 관세법령상 과세물건 확정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는 수출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가격과 그 중량에 따라 부과한다.
- ②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 시기는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이다.
- ③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 시기는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이다.
- ④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관세법 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 시기는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이다.
- ⑤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 시기는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이다.

**7. 관세법령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 ②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 ③ 관세법 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④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 ⑤ 관세법 제158조(보수작업) 제5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8. 관세법령상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없다.
- ②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관세법 제38조 제4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물품(관세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 납부)를 준용한다.

**9. 관세법령상 세액의 수정 및 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를 할 수 있다.
- ②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자가 제4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0. 관세법령상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② 국가에 기증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 ④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를 포함한 체납된 관세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 ⑤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60개월의 범위 내에서 체납된 관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11. 관세법령상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조사결과를 ( )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개시일부터 ( )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제출한 날의 다음날, 1      ② 제출한 날, 2      ③ 제출한 날의 다음날, 2  
 ④ 제출한 날, 3      ⑤ 제출한 날의 다음날, 3

12. 관세법령상 관계부처의 장이 조정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해당 물품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자료로 명시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해당 연도와 그 전후 1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ㄴ. 최근 2년간의 분기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  
 ㄷ. 최근 2년간의 분기별 주요 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ㄹ. 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 및 해당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3. 관세법령상 세율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과세의 부과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할 수 있고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강화하여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③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시한, 수량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물이 아닌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⑤ 국제협력관세와 관련하여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18. 관세법령상 세관장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② 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③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교육용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가 곤란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 ④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 ⑤ 의료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19. 관세법령상 관세가 면제되는 외교관용 물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의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 ②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공사관의 3등 서기관의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 ③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영사관의 명예총영사가 사용하는 물품
- ④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영사관의 업무용품
- ⑤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20. 관세법령상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특정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동식물의 번식·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으로서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인 호밀
- ②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것
- ③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解體材) 및 장비
- ④ 우리나라의 선박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 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21.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압수·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 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서면 또는 유선상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관세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2. 관세법령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 ②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그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③ 관세청장은 세관장의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해당 의견서의 원본을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 ⑤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3. 관세법령상 개항(開港) 및 입출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 ③ 개항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선장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선원 및 항공사 담당직원으로 한정한다.

**24. 관세법령상 관세통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한다.
- ②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 ③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 ④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 ⑤ 관세통로는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육로 또는 항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25. 관세법령상 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없다.
- ②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한다.
- ③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한다.
- ④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26. 관세법령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보수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일정부분 변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 ②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 ③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 없이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 ④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보지 않는다.
  - ⑤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27. 관세법령상 보세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보세운송업자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세관장은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없다.
  - ⑤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8. 관세법령상 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 정보를 다른 국가와 상호 조건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 ②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와 징수, 과세 불복에 대한 심리 및 형사소추를 위하여 수출입신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국가와 관세행정에 관한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과 국제기구와 체결한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국가와 교환할 수 있다.
  - ③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240조의6 제3항에 따라 다른 국가와 수출입신고자료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 ④ 관세청장은 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관세법을 위반한 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를 발급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관세청장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에 수출입신고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29. 관세법령상 물품의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②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 ③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둔다.
- ④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⑤ 세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다.

**30. 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 ②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 ③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 ④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 ⑤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31. 관세법령상 입항전수입신고 및 신고된 물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입항 전에 그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 ②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 ③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에 반입되어야 하지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 ⑤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32. 관세법령상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ㄴ. 지방자치단체조합
- ㄷ.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ㄹ.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 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단체

- ① ㄱ, ㅁ
- ② ㄱ, ㄷ, ㄹ
- ③ ㄱ, ㄴ, ㄷ, ㅁ
- ④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33. 관세법령상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세관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③ 관세청장은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④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관세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⑤ 관세청장은 관세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4. 관세법령상 밀수출입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이 몰수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선박의 소유자는 그것이 범죄에 사용되는 정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함)

- ① 범죄물품을 선박에 적재하려고 한 경우
- ② 선박을 이용하여 범죄물품을 운반한 경우
- ③ 범죄물품 등을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을 매입하려는 경우
- ④ 선박을 이용하여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취득한 경우
- ⑤ 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에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한 경우

35. 관세법령상 통고처분에 관한 조문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관세법 제311조(통고처분)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 관세법 시행령 제270조의2(통고처분) ① 법 제3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벌금 최고액의 ( 가 )으로 한다.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증거물을 은닉·인멸·훼손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 나 )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 ① 가: 100분의 20, 나: 100분의 30      ② 가: 100분의 20, 나: 100분의 50  
 ③ 가: 100분의 30, 나: 100분의 20      ④ 가: 100분의 50, 나: 100분의 20  
 ⑤ 가: 100분의 50, 나: 100분의 50

3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②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의 공정을 수행한 모든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③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④ 원산지가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지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보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제조된 경우,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가 그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르면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제조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3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긴 협정부터 짧은 협정까지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 ㄱ. 칠레와의 협정(서명일 기준 유효기간)
- ㄴ. 미합중국과의 협정(발급일 기준 유효기간)
- ㄷ. 콜롬비아와의 협정(서명일 기준 유효기간)

- ① ㄱ - ㄴ - ㄷ
- ② ㄱ - ㄷ - ㄴ
- ③ ㄴ - ㄱ - ㄷ
- ④ ㄴ - ㄷ - ㄱ
- ⑤ ㄷ - ㄴ - ㄱ

3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잠정긴급관세조치의 대상국가와 최대 적용기간의 연결로 옳은 것은?

- ① 터키 - 180일
- ② 페루 - 120일
- ③ 캐나다 - 180일
- ④ 칠레 - 120일
- ⑤ 유럽연합당사자 - 180일

3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계약상대국과 원산지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베트남 - 조사 요청일부터 6개월 이내
- ② 터키 -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
- ③ 중국 -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④ 페루 -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0일 이내
- ⑤ 유럽연합당사자 -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

4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관세청장이 행하는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상담
- ②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취득에 관한 교육
- ③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의 대행과 비용지원
- ④ 원산지증명에 관한 전산처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 ⑤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보관방법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무역영어

41. 전자적 제시를 위한 UCP추록(eUCP Version 1.1) 제e7조 ‘거절통지(Notice of Refusal)’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If an issuing bank, the confirming bank, if any, or a nominated bank acting on their behalf, provides a notice of refusal of a presentation which includes electronic records and does not receive instructions from the party to which notice of refusal is given within ( ) from the date the notice of refusal is given for the disposition of the electronic records, the bank shall return any paper documents not previously returned to the presenter but may dispose of the electronic records in any manner deemed appropriate without any responsibility.

- ① 5 banking days                      ② 5 calendar days                      ③ 15 calendar days  
④ 30 banking days                      ⑤ 30 calendar days

42. 선하증권에 관한 법규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Hague Rules, 1924)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This monetary unit corresponds to sixty-five and a half milligrammes of gold of millesimal fineness nine hundred.  
② Those contracting States in which the pound sterling is not a monetary unit reserve to themselves the right of translating the sums indicated in this Convention in terms of pound sterling into terms of their own monetary system in round figures.  
③ The national laws may reserve to the debtor the right of discharging his debt in national currency according to the rate of exchange prevailing on the day of the arrival of the ship at the port of discharge of the goods concerned.  
④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all bills of lading issued in any of the contracting States.  
⑤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carrier under any statute for the time being in force relating to the limitation of the liability of owners of sea-going vessels.

4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1980) 제12조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y provision of article 11, article 29 or Part II of this Convention that ①does not allow a contract of sale or its modification or termination ②by agreement or any offer, acceptance or other indication of intention to be made in any form other than in writing ③does not apply where any party has his place of business in a Contracting State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④under article 96 of this Convention. The parties ⑤may not derogate from or vary the effect of this article.

- ① does not allow
- ② by agreement or any offer, acceptance or other indication of intention
- ③ does not apply
- ④ under article 96 of this Convention
- ⑤ may not derogate

44.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 2009) ICC(A)의 제10조 ‘항해의 변경(Change of Voyag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Where, after attachment of this insurance, the destination is changed ①by the Assured, this must be notified promptly to ②Insurers for rates and terms to be agreed. Should a loss occur prior to such agreement being obtained cover may be provided but only if cover would have been available ③at a reasonable commercial market rate on reasonable market terms.

Where the subject-matter insured commences the transit contemplated by this insurance, but, ④without the knowledge of the Assurer or their employees the ship sails for another destination, this insurance ⑤will nevertheless be deemed to have attached at commencement of such transit.

- ① by the Assured
- ② Insurers for rates and terms to be agreed
- ③ at a reasonable commercial market rate on reasonable market terms
- ④ without the knowledge of the Assurer or their employees
- ⑤ will nevertheless be deemed to

4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1980) 제58조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If the ( ) is not bound to pay the price at any other specific time, he must pay it when the seller places either the goods or documents controlling their disposition at the buyer's disposal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and this Convention. The ( ) may make such payment a condition for handing over the goods or documents.

(2) If the contract involves carriage of the goods, the ( ) may dispatch the goods on terms whereby the goods, or documents controlling their disposition, will not be handed over to the ( ) except against payment of the price.

(3) The ( ) is not bound to pay the price until he has had an opportunity to examine the goods, unless the procedures for delivery or payment agreed upon by the parties are inconsistent with his having such an opportunity.

- ① buyer - seller - seller - buyer - buyer
- ② buyer - seller - buyer - buyer - seller
- ③ seller - buyer - seller - seller - buyer
- ④ seller - seller - buyer - buyer - buyer
- ⑤ buyer - seller - seller - seller - seller

4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1980) 제73조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In the case of a contract for delivery of goods by ㉠partial shipment, if the failure of one party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in respect of any ㉡instalments constitutes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with respect to that ㉣transshipment, the other party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with respect to that ㉤instalment.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47.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CMI 통일규칙(CMI Uniform Rules for Sea Waybills, 1990)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These Rules shall apply when adopted by a contract of carriage which is covered by a bill of lading or similar document of title, whether the contract be in writing or not.
- ② "Contract of carriage" shall mean any contract of carriage subject to these Rules which is to be performed wholly or partly by sea.
- ③ "Carrier" and "Shipper" shall mean the parties named in or identifiable as such from the contract of carriage.
- ④ The shipper on entering into the contract of carriage does so not only on his own behalf but also as agent for and on behalf of the consignee, and warrants to the carrier that he has authority so to do.
- ⑤ This rule shall apply if, and only if, it be necessary by the law applicable to the contract of carriage so as to enable the consignee to sue and be sued thereon. The consignee shall be under no greater liability than he would have been had the contract of carriage been covered by a bill of lading or similar document of title.

48. Incoterms<sup>®</sup> 2010 CIF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The seller has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pay any import duty or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 ② The buyer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s and freight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 ③ The buyer contracts for insurance cover against the seller's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during the carriage.
- ④ The buyer should note that under CIF he is required to obtain insurance only on minimum cover.
- ⑤ The seller is required either to deliver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or to procure goods already so delivered for shipment to the destination.

49.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계약 조항은?

A clause in a contract that is intended to cover cases in which unforeseen events occur that fundamentally alter the equilibrium of a contract resulting in an excessive burden being placed on one of the parties involved.

- ① Litigation clause                      ② Institute cargo clause      ③ Arbitration clause
- ④ Hardship clause                        ⑤ Claim clause

50. Incoterms® 2010 DAT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Delivered at Terminal"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once unloaded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carrier at a named terminal at the named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 ② The seller bears all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and unloading them at the terminal at the named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 ③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specify as clearly as possible the terminal and, if possible, a specific point within the terminal at the agreed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as the risks to that point are for the account of the buyer.
- ④ If the parties intend the buyer to bear the risks and costs involved in transporting and handling the goods from the terminal to another place, then the DAP or DDP rules should be used.
- ⑤ The seller has an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pay any import duty or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51.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일부이다.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Consequently, the undertaking of a bank to honour, to negotiate or to fulfil any other obligation under the credit is not subject to claims or defences by the applicant resulting from its relationships with the issuing bank or the beneficiary.

A beneficiary can in no case avail itself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s existing between banks or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issuing bank.

- ① 신용장의 추상성                      ② 신용장의 엄밀일치성      ③ 신용장의 독립성
- ④ 신용장의 상당일치성                ⑤ 신용장의 명확성

52.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URC 522) 제8조 ‘서류의 작성(Creation of Documents)’의 내용이다. 밑줄 친 서류(documents)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Where the remitting bank instructs that either the collecting bank or the drawee is to create documents that were not included in the collection, the form and wording of such documents shall be provided by the remitting bank.

- ① bills of exchange                      ② promissory notes                      ③ letters of guarantee  
 ④ trust receipts                          ⑤ letters of undertaking

53. Incoterms® 2010 ‘서문(Introduction)’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The carriage costs will sometimes include the costs of handling and moving the goods within port or container terminal facilities and the (ㄱ) may well charge these costs to the (ㄴ). In these circumstances, the (ㄷ) will want to avoid paying for the same service twice: once to the (ㄹ) as part of the total selling price and once independently to the (ㅁ).

- ① ㄱ: buyer    ② ㄴ: seller    ③ ㄷ: buyer    ④ ㄹ: carrier    ⑤ ㅁ: seller

54.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URC 522) 제25조의 내용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If the principal nominates a representative to act as ( ) in the event of non-payment and/or non-acceptance the collection instruction should clearly and fully indicate the powers of such ( ). In the absence of such indication banks will not accept any instructions from the ( ).

- ① signatory                                  ② case-of-need                                  ③ remitting bank  
 ④ principal                                      ⑤ collecting bank

55. 영국해상보험법(MIA, 1906) 제46조 및 제49조의 내용 중 ‘이로(Devi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Where a ship, without lawful excuse, deviates from the voyage contemplated by the policy, the insurer is discharged from liability as from the time of deviation.
- ② It is immaterial that the ship may not in fact have left the course of voyage contemplated by the policy when the loss occurs.
- ③ There is a deviation from the voyage contemplated by the policy where the course of the voyage is not specifically designated by the policy, but the usual and customary course is departed from.
- ④ Deviation or delay in prosecuting the voyage contemplated by the policy is excused where caused by the barratrous conduct of the master or crew, if barratry be one of the perils insured against.
- ⑤ When the cause excusing the deviation or delay ceases to operate, the ship must resume her course, and prosecute her voyage, with reasonable dispatch.

56. 영국물품매매법(SGA, 1979) 제29조 ‘인도규칙(Rules about delive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Whether it is for the buyer to take possession of the goods or for the seller to send them to the buyer is a question depending in each case on the contract, express or implied, between the parties.
- ② Apart from any such contract, express or implied, the place of delivery is the buyer's place of business if he has one, and if not, his residence; except that, if the contract is for the sale of specific goods, which to the knowledge of the parties when the contract is made are in some other place, then that place is the place of delivery.
- ③ Where under the contract of sale the seller is bound to send the goods to the buyer, but no time for sending them is fixed, the seller is bound to send them within a reasonable time.
- ④ Where the goods at the time of sale are in the possession of a third person, there is no delivery by seller to buyer unless and until the third person acknowledges to the buyer that he holds the goods on his behalf; but nothing in this section affects the operation of the issue or transfer of any document of title to goods.
- ⑤ Demand or tender of delivery may be treated as ineffectual unless made at a reasonable hour; and what is a reasonable hour is a question of fact.

57.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New York, 1958) 제5조에 따라 승인 및 집행이 요구된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인정하는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 ①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referred to in article II were, under the law applicable to them, under some incapacity, or the said agreement is not valid under the law to which the parties have subjected it or, failing any indication thereon, under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award was made.
- ② The party against whom the award is invoked was not given proper notice of the appointment of the arbitrator or of the arbitration proceedings or was otherwise unable to present his case.
- ③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l authority or the arbitral procedure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or, failing such agreement,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arbitration took place.
- ④ The award has not yet become binding on the parties, or has been set aside or suspended by a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untry in which, or under the law of which, that award was made.
- ⑤ The subject matter of the difference is not capable of settlement by arbitration under the law of that country; or The 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the award would be contrary to the public policy of that country.

58.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 ‘정의(Definitions)’ 및 제3조 ‘해석(Interpretation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Confirming bank means the bank that adds its confirmation to a credit upon the issuing bank’s authorization or request.
- ② Banking day means a day on which a bank is regularly open at the place at which an act subject to these rules is to be performed.
- ③ The terms “first half” and “second half” of a month shall be construed respectively as the 1st to the 15th and the 16th to the last day of the month, all dates inclusive.
- ④ The terms “beginning”, “middle” and “end” of a month shall be construed respectively as the 1st to the 9th, the 10th to the 19th and the 20th to the last day of the month, all dates inclusive.
- ⑤ Negotiation means the purchase by the nominated bank of drafts (drawn on a bank other than the nominated bank) and/or documents under a complying presentation, by advancing or agreeing to advance funds to the beneficiary on or before the banking day on which reimbursement is due to the nominated bank.

59. 국제물품복합운송에 관한 유엔협약(MT조약, 1980) 제27조 ‘중재(Arbitr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parties may provide by agreement evidenced in writing that any dispute that may arise relating to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under this Convention shall be referred to arbitration.
- ② The arbitration proceedings shall, at the option of the claimant, be instituted at a place in a State within whose territory is situated: the principal place of business of the plaintiff or, in the absence thereof, the habitual residence of the plaintiff.
- ③ The arbitrator or arbitration tribunal shall apply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 ④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and 3 of this article shall be deemed to be part of every arbitration clause or agreement and any term of such clause or agreement which is inconsistent therewith shall be null and void.
- ⑤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affect the validity of an agreement on arbitration made by the parties after the claim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has arisen.

60.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9조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Any signature by an agent must not indicate whether the agent has signed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 or for or on behalf of the master.
- ② The date of issu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dispatch, taking in charge or shipped on board, and the date of shipment.
- ③ However, if the transport document indicates, by stamp or notation, a date of dispatch, taking in charge or shipped on board, this date will not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 ④ A transport document must not indicate that the goods will or may be transhipped provided that the entire carriage is covered by one and the same transport document.
- ⑤ A transport document indicating that transhipment will or may take place is not acceptable, if the credit prohibits transhipment.

6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1980) 제19조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A reply to an offer which purports to be an acceptance but contains additions, limitations or other modifications is a rejection of the ( ) and constitutes a(n) ( ).

(2) However, a reply to an offer which purports to be an acceptance but contains additional or different terms which do not materially alter the terms of the offer constitutes a(n) ( ), unless the offeror, without undue delay, objects orally to the discrepancy or dispatches a notice to that effect. If he does not so object, the terms of the contract are the terms of the offer with the modifications contained in the ( ).

- ① acceptance - conditional offer - acceptance - counter offer
- ② offer - counter offer - conditional offer - acceptance
- ③ conditional offer - acceptance - offer - acceptance
- ④ offer - counter offer - acceptance - acceptance
- ⑤ conditional offer - acceptance - offer - counter offer

62. 전자적 제시를 위한 UCP추록(eUCP Version 1.1) 제e4조 '서식(Format)' 및 제e5조 '제시(Present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An eUCP credit allowing presentation of electronic records must state a place for presentation of the electronic records.
- ② Electronic records may not be presented separately and need to be presented at the same time.
- ③ A presentation not so identified may be treated as not received.
- ④ An eUCP credit must specify the formats in which electronic records are to be presented. If the format of the electronic record is not so specified, it may be presented in any format.
- ⑤ Presentation is deemed not to have been made if the beneficiary's notice is not received.



6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1980) 제35조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 Except where the parties have agreed otherwise,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unless they:
- (a) are fit for the purposes for which ①goods of the same description would ordinarily be used;
  - (b) are fit for any particular purpose expressly or impliedly made known to the seller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②except where the circumstances show that the buyer did not rely, or that it was unreasonable for him to rely, on the seller's skill and judgement;
  - (c) possess the qualities of goods which ③the seller has held out to the buyer as a sample or model;
  - (d) are contained or packaged in the manner usual for such goods or, where there is no such manner, in a manner ④adequate to preserve and protect the goods.
- (3) The seller is not liable under subparagraphs (a) to (d) of the preceding paragraph for any lack of conformity of the goods if,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⑤the seller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of such lack of conformity.

- ① goods of the same description would ordinarily be used
- ② except where the circumstances show that the buyer did not rely
- ③ the seller has held out to the buyer
- ④ adequate to preserve and protect the goods
- ⑤ the seller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of

66.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New York, 1958)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arbitral awards not considered as domestic awards in the State where thei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are sought.
- ② When signing, ratifying or acceding to this Convention, or notifying extension under article X hereof, any State may on the basis of reciprocity declare that it will apply the Convention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wards made only in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 ③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recognize an oral agreement under which the parties undertake to submit to arbitration all or any differences which have arisen or which may arise between them in respect of a defined legal relationship, whether contractual or not, concerning a subject matter capable of settlement by arbitration.
- ④ The court of a Contracting State, when seized of an action in a matter in respect of which the parties have made an agreement within the meaning of this article, shall, at the request of one of the parties, refer the parties to arbitration, unless it finds that the said agreement is null and void, inoperative or incapable of being performed.
- ⑤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recognize arbitral awards as binding and enforce them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procedure of the territory where the award is relied upon,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in the following articles.

67. Incoterms® 2010 FCA 규칙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Free Carrier"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 )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 ) at the seller's premises or another named place. The ( ) are well advised to specify as clearly as possible the point within the named place of delivery, as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at that point.

FCA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However, the ( )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pay any import duty or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 ① carrier - buyer - parties - seller      ② buyer - carrier - sellers - carrier
- ③ carrier - buyer - parties - carrier      ④ buyer - carrier - sellers - buyer
- ⑤ carrier - buyer - buyers - seller

68.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CMI 통일규칙(CMI Uniform Rules for Sea Waybills, 1990) 제6조 ‘운송물처분권(Right of Control)’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i) Unless the ( ) has exercised his option under subrule (ii) below, he shall be the only party entitled to give the ( ) instructions in relation to the contract of carriage. Unless prohibited by the applicable law, he shall be entitled to change the name of the ( ) at any time up to the consignee claiming delivery of the goods after their arrival at destination, provided he gives the carrier reasonable notice in writing, or by some other means acceptable to the carrier, thereby undertaking to indemnify the ( ) against any additional expense caused thereby.

(ii) The shipper shall have the option, to be exercised not later than the receipt of the goods by the carrier, to transfer the right of control to the ( ). The exercise of this option must be noted on the sea waybill or similar document, if any. Where the option has been exercised the consignee shall have such rights as are referred to in subrule (i) above and the shipper shall cease to have such rights.

- ① carrier - shipper - consignee - carrier - consignee
- ② carrier - shipper - consignee - consignee - shipper
- ③ shipper - carrier - consignee - carrier - shipper
- ④ carrier - shipper - shipper - shipper - consignee
- ⑤ shipper - carrier - consignee - carrier - consignee

69. Incoterms® 2010 ‘서문(Introduction)’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The first class includes the seven Incoterms® 2010 rules that can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selected and irrespective of whether one or more than one mode of transport is employed. EXW, FCA, CPT, CIP, DAT, DAP and DDP belong to this class. They can be used even when there is no maritime transport at all. It is important to remember, however, that these rules can be used in cases where a ( ) is used for part of the carriage.

In the second class of Incoterms® 2010 rules, the point of delivery and the place to which the goods are carried to the buyer are both ports, hence the label "sea and inland waterway" rules. FAS, FOB, CFR and CIF belong to this class. Under the last three Incoterms rules, all mention of ( ) as the point of delivery has been omitted in preference for the goods being delivered when they are "on board" the vessel. This more closely reflects modern commercial reality and ( ) the rather dated image of the risk swinging to and fro across an imaginary perpendicular line.

- ① ship - the ship's rail - avoids                      ② carrier - alongside ship - imitates
- ③ carrier - the ship's rail - avoids                    ④ ship - alongside ship - imitates
- ⑤ carrier - on board - avoids

70. 다음 계약서의 내용에서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This contract sets forth the ( ) and understanding between the parties as to the subject matter of this contract and merges and supersedes all prior discussions, agreements and understandings between them, and neither party shall be bound by any condition, definition, warranty or representation other than as expressly provided for in this contract, or as may be on a subsequent date duly set forth in writing and signed by a duly authorized officer of the party to be bound.

- ① Entire agreement clause                              ② Infringement clause
- ③ Jurisdiction clause                                      ④ Liquidated damages clause
- ⑤ Escalator clause



73. 화환신용장 발행 Format(MT 700)을 사용하여 발행된 다음 신용장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46A : Documents Required

- +SIGNED COMMERCIAL INVOICE IN TRIPLICATE
- +FULL SET OF CLEAN OCEAN ON BOARD BILLS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SELLER AND ENDORSED IN BLANK AND MARKED 'FREIGHT PREPAID' AND NOTIFY APPLICANT
-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N DUPLICATE, ENDORSED IN BLANK FOR 110 PCT OF THE INVOICE VALUE INCLUDING INSTITUTE CARGO CLAUSE(ALL RISKS) INSTITUTE WAR CLAUSE AND INSTITUTE SRCC CLAUSE WITH CLAIMS PAYABLE IN USA IN THE CURRENCY OF THE DRAFTS
- +PACKING LIST IN TRIPLICATE

72 : Sender to Receiver Information

THIS CREDIT IS SUBJECT TO U.C.P(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 ① 상업송장은 서명되지 않아도 된다.
- ② 수취식 선하증권을 제시하면 된다.
- ③ 선하증권의 배서방식은 기명식배서이다.
- ④ 요구되는 보험서류는 2통이다.
- ⑤ 포장명세서는 사본 3통을 제시하면 된다.

74.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URC 522) 제21조 ‘수수료 및 비용(Charges and Expense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If the collection instruction specifies that collection charges and/or expenses are to be for account of the drawee and the drawee refuses to pay them, the remitting bank may deliver the document(s) against payment or acceptance or on other terms and conditions as the case may be, without collecting charges and/or expenses, unless sub-Article 21(b) applies.
- ② Whenever collection charges and/or expenses are so waived they will be for the account of the party from whom the collection was received and may be deducted from the proceeds.
- ③ Where the collection instruction expressly states that charges and/or expenses may not be waived and the drawee refuses to pay such charges and/or expenses, the presenting bank will not deliver documents and wi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consequences arising out of any delay in the delivery of the document(s).
- ④ When payment of collection charges and/or expenses has been refused the presenting bank must inform by telecommunication or, if that is not possible, by other expeditious means without delay the bank from which the collection instruction was received.
- ⑤ In all cases where in the express terms of a collection instruction or under these Rules, disbursements and/or expenses and/or collection charges are to be borne by the principal, the collecting bank(s)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promptly outlays in respect of disbursements, expenses and charges from the bank from which the collection instruction was received, and the remitting bank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promptly from the principal any amount so paid out by it, together with its own disbursements, expenses and charges, regardless of the fate of the collection.

75. 은행 간 대금상환 통일규칙(URR 725) 제2조 ‘정의(Definitions)’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Reimbursing bank" means the bank that has issued a credit and the reimbursement authorization under that credit.
- ② "Reimbursement authorization" means an instruction or authorization, independent of the credit, issued by an issuing bank to a reimbursing bank to reimburse a claiming bank or, if so requested by the issuing bank, to accept and pay a time draft drawn on the reimbursing bank.
- ③ "Reimbursement claim" means a request for reimbursement from the claiming bank to the issuing bank.
- ④ "Reimbursement amendment" means an advice from the issuing bank to a claiming bank stating changes to a reimbursement authorization.
- ⑤ "Reimbursement undertaking amendment" means a separate irrevocable undertaking of the reimbursing bank, issued upon the authorization or request of the issuing bank, to the claiming bank named in the reimbursement authorization, to honour that bank's reimbursement claim, provide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reimbursement undertaking have been complied with.

76. 영국물품매매법(SGA, 1979) 제2조 ‘매매계약(Contract of sal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A contract of sale of goods is a contract by which the buyer transfers or agrees to transfer the property in goods to the seller for a money consideration, called the price.

ㄴ. A contract of sale may be absolute or conditional.

ㄷ. Where under a contract of sale the property in the goods is transferred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the contract is called a sale.

ㄹ. Where under a contract of sale the transfer of the property in the goods is to take place at a future time or subject to some condition later to be fulfilled the contract is called an agreement to sell.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7. 영국해상보험법(MIA, 1906) 제60조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In the case of a constructive total loss no notice of abandonment need be given.
- ② In the case of damage to a ship, where she is so damaged by a peril insured against that the cost of repairing the damage would exceed the value of the ship when repaired.
- ③ In the case of damage to goods, where the cost of repairing the damage and forwarding the goods to their destination would exceed their value on arrival.
- ④ Where the assured is deprived of the possession of his ship or goods by a peril insured against.
- ⑤ It is unlikely that the assured can recover the ship or goods, as the case may be.

78.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A credit by its nature is a separate transaction from the sale or other contract on which it may be based. Banks are concerned with or bound by such contract, if any reference whatsoever to it is included in the credit.
- ②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article 38, a credit can neither be amended nor cancelled without the agreement of the issuing bank, the advising bank, if any, and the beneficiary.
- ③ A bank utilizing the services of an advising bank or second advising bank to advise a credit must use the same bank to advise any amendment thereto.
- ④ If a credit contains a condition without stipulating the document to indicate compliance with the condition, banks will deem such condition as stated and will regard it.
- ⑤ Banks deal with goods, services or performance to which documents may relate.

79. 전자적 제시를 위한 UCP추록(eUCP Version 1.1) 제e2조 ‘UCP에 대한 eUCP의 관계(Relationship of the eUCP to the UCP)’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A credit subject to the eUCP is also subject to the ( ) without express incorporation of the UCP.  
 If an eUCP credit allows the beneficiary to choose between presentation of paper documents or electronic records and it chooses to present only paper documents, the ( ) alone shall apply to that presentation. If only paper documents are permitted under a(n) ( ) credit, the ( ) alone shall apply.

- ① eUCP - UCP - eUCP - UCP                      ② UCP - UCP - eUCP - UCP
- ③ UCP - eUCP - eUCP - UCP                      ④ eUCP - UCP - UCP - eUCP
- ⑤ UCP - eUCP - UCP - UCP

80. Incoterms® 2010 ‘사용지침(Guidance Note)’의 일부이다. 각각에 해당하는 규칙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identify as precisely as possible in the contract both the place of delivery, where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and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o which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the carriage.  
 ㄴ.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specify as clearly as possible the point within the agreed place of destination, as the risks to that point are for the account of the seller.  
 ㄷ.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specify as clearly as possible the point within the agreed place of destination, as the costs and risks to that point are for the account of the seller.

- ① ㄱ: CIP, ㄴ: DDP, ㄷ: CPT                      ② ㄱ: CPT, ㄴ: DAP, ㄷ: CFR
- ③ ㄱ: CIP, ㄴ: DDP, ㄷ: DAP                      ④ ㄱ: CPT, ㄴ: DAP, ㄷ: DDP
- ⑤ ㄱ: CFR, ㄴ: CPT, ㄷ: DAP

## 내국소비세법

###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운수업
- ② 금융 및 보험업
- ③ 도매 및 소매업
- ④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⑤ 숙박 및 음식점업

### 2.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② 일반과세자인 제조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로 한다.
-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 ④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폐업일로 한다.
- ⑤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운수업의 경우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② 다단계판매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③ 비거주자인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고정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④ 사업자가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 ⑤ 제조업의 경우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서 제외한다.

#### 4.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②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인도하는 경우
- ②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 ③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 ④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⑤ 사업자가 민사집행법상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 6.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면세 재화를 운반·가공하거나 판매 대행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이다.
- ②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그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를 따른다.
- ③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는 별도의 공급으로 본다.
- ④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⑤ 골프장·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 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7.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ㄴ.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판매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 ㄷ.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전부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로 본다.
- ㄹ.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8.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 ②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 ③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 ④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과세사업상의 기술 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9.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 ②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보세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 ③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④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0.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닌 것은?**

- ①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
- ②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
- ③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④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 ⑤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1.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이지만, 면세대상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③ 미가공 식료품 중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단순히 혼합한 것은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면세대상인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면세를 포기하여야 한다.
- ⑤ 면세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으려면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 ③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로서 물자를 조달할 때에 그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달청장이 실제로 실수요자에게 그 물자를 인도할 때에는 그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④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에 위탁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수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⑤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를 준용하여 해당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3.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가 가스도입판매사업자를 위하여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해당 가스도입판매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④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4.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 ㄴ.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 ㄷ.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ㄹ.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 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15.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②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 ③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⑤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은 제외)으로 한다.

**16.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 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 ③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④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
- 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

17.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물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하여 공급가액으로 한다.
- ②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법률에 따라 산정한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 ④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⑤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 제외)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8.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甲은 2018년 5월 1일 과세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은 2018년 6월 1일에 신청하였다. 2018년 제1기 확정신고시 일반과세자 甲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1)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 내역

구분	5. 1. - 5.30.	6. 1. - 6.30.	계
공급가액	40,000,000원	50,000,000원	90,000,000원
매입세액	3,000,000원	4,000,000원	7,000,000원

- (2) 공급가액은 모두 과세 공급가액이며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3) 매입세액은 모두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불공제액은 없다.

- ① 1,000,000원    ② 2,000,000원    ③ 2,200,000원    ④ 5,000,000원    ⑤ 5,200,000원

19.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 ②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를 준용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다.
- ③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④ 수입되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 ⑤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0. 부가가치세법상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甲은 외국에서 수입한 과세재화를 가공하여 보세구역 외의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였다. 사업자 甲이 수입재화를 가공하여 보세구역 외의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제시된 자료 외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음)

○ 가공 수입재화의 공급가액	10,000,000원
○ 수입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5,000,000원
○ 관세	300,000원
○ 개별소비세	150,000원
○ 교육세	50,000원

- ① 4,000,000원                      ② 4,500,000원                      ③ 5,000,000원
- ④ 5,500,000원                      ⑤ 10,000,000원



23. 간이과세자였던 개인사업자 甲이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은? (단, 모든 자산은 외부에서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1) 변경일 현재 보유 자산 내역

종 류	취득일자	취득가액	장부가액	시 가
상 품	2017. 3.20.	22,000,000원	22,000,000원	11,000,000원
건 물	2016. 5.10.	550,000,000원	385,000,000원	440,000,000원

(2) 甲에게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음

○ 2016년: 20%    ○ 2017년: 25%    ○ 2018년: 30%

- ① 23,900,000원                      ② 26,350,000원                      ③ 30,750,000원  
 ④ 31,500,000원                      ⑤ 33,500,000원

24. 부가가치세법상 결정·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보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다.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 ③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 ④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되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확인되더라도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결정·경정은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25.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납부유예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③ 납부를 유예받은 중소기업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등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세관장은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된 중소기업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의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세관장은 중소기업자가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26. 부가가치세법상 가장 낮은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단, 2018년 1월 1일 이후 공급과 관련된 것이라고 가정함)

- 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 ②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④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27.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국내로 공급되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구매자가 공급하는 자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제공받은 때와 구매자가 전자적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대금의 결제를 완료한 때 중 빠른 때로 한다.
- ②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 ③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는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간편사업자등록자가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예정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을 말함)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 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서 중개에 관한 행위 등을 하는 자로서 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자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

**28.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없다.
- ② 제조업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하여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③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 간이과세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뺄 수 있다.
- ⑤ 통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29.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조기 환급 대상이 된다.
- ②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조기환급을 받기 위하여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 ③ 조기환급 대상인 사업자가 조기환급신고기한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④ 조기환급세액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시설투자액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구분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 ⑤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등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 등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30.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거래의 당사자는 모두 일반과세자라고 가정함)

- ㄱ.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ㄴ.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단, 착오 기재가 아님)
- ㄷ.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정시 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ㄹ. 예정신고시 제출하지 못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한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1. 개별소비세법상 무조건 면세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수출 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것
- ②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하는 물품
- ③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기관이 조난으로 해체되어서 생긴 해체재(解體材)와 장비품(裝備品)
- ④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 ⑤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물품

32.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이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20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투전기(投錢機)	ㄴ. 귀금속 제품
ㄷ. 고급 가구	ㄹ. 전기승용자동차
ㅁ. 수렵용 총포류	

- ① ㄱ, ㄴ
- ② ㄱ, ㅁ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ㄹ, ㅁ

33. 개별소비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①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의 경영자
- ②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 ③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영자
- ④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⑤ 과세물품인 고급 모피를 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

34. 개별소비세법상 500만원을 한도로 조건부면세인 것은?

- ① 보석으로서 이화학(理化學) 실험연구용, 공업용 및 축음기(蓄音機) 침(針) 제작용인 것
- ② 학교에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 ③ 외국으로부터 사원·교회 등에 기증되는 의식용품(儀式用品) 또는 예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④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 ⑤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함)

**35. 개별소비세법상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제조장의 영업을 폐업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사실상 폐업한 자는 신고서 제출 기한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미납세반출자와 그 반출된 물품을 반입한 자가 동일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36. 주세법상 주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
- ③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 ④ 주정 외의 주류를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 주세의 과세표준에는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⑤ 주정 외의 주류를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 주세의 과세표준에는 주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여 출고되는 것으로서 상품정보를 무선으로 식별하도록 제작된 전자인식표의 가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7. 주세법상 납세의 담보 및 주세의 보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 제조자에 대하여 주세액의 120%에 상당하는 가액(價額)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② 납세의무자가 주세법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에 대하여 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판매한 금액으로 주세를 충당하여야 한다.
- ③ 납세의 보증으로 보존하는 주류의 가격은 제조원가로 한다.
- ④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 ⑤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술덧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술덧은 청주로 보아 그 제조자로부터 주세를 지체 없이 징수한다.

38. 주세법상 주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출입국항의 보세구역안에서 출국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것
- ② 명예영사관에 납품하는 것
- ③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납품하는 것
- ④ 외국선원휴게소안에서 음용에 제공하기 위해 납품하는 것
- ⑤ 여행자가 입국할 때에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39. 주세법상 주류에 관한 세율로 옳은 것은? (단, 경감세율은 고려하지 않음)

- ① 탁주: 100분의 5                      ② 맥주: 100분의 30                      ③ 과실주: 100분의 72
- ④ 청주: 100분의 72                      ⑤ 약주: 100분의 72

40. 주세법상 주류가 제조장에서 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ㄴ.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공매 또는 경매되거나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된 경우
- ㄷ. 제조장에서 부패로 인해 주류를 폐기한 경우
- ㄹ. 관할세무서장이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하고 기간을 정하여 주류제조장에 현존하는 반제품에 대하여 제조·출고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한 경우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회 계 학

※ 아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단,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며, 자료에서 제시한 것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 4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해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충실하게 표현되었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②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
- ③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이해가능성은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장시키는 질적 특성이다.
- ④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 ⑤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42. 재무제표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한다.
- ② 총포괄손익은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 ③ 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평가할 때 경영진은 적어도 보고기간말로 부터 향후 12개월 기간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 ④ 재분류조정은 당기나 과거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으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 금액을 말한다.
- ⑤ 주식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하는 정보에 추가하여 제공된 정보를 말한다.

**43.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또는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 ② 비용의 성격별 분류방법은 기능별 분류방법보다 자의적인 배분과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더 개입될 수 있다.
- ③ 해당 기간에 인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의 항목은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두 개의 보고서(당기손익 부분을 표시하는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표시한다.
- ④ 영업주기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의 취득시점부터 그 자산이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실현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다.
- ⑤ 기업의 정상영업주기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는 경우 그 주기는 12개월인 것으로 가정한다.

**44.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 보관이 필요한 경우의 보관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 ② 통상적으로 상호교환 가능한 대량의 재고자산 항목에 개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 ③ 재고자산의 지역별 위치차이로 인해 동일한 재고자산에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 ④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투입될 원재료를 감액하지 아니한다.
- ⑤ 표준원가법, 매출총이익법 등의 원가측정방법은 자산 통제나 재무보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45.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설시작 전에 건설용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획득한 수익은 건설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재평가는 보고기간말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 ③ 유형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이 다른 자산의 생산에 사용된다면 감가상각액은 해당 자산 원가의 일부가 된다.
- ④ 항공기를 감가상각할 경우 동체와 엔진을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 ⑤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가 유의적으로 달라졌다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 회계정책 변경으로 처리한다.

46. 자본유지개념과 이익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무자본유지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원가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한다.
- ② 자본유지개념은 기업의 자본에 대한 투자수익과 투자회수를 구분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 ③ 자본유지개념 중 재무자본유지는 명목화폐단위 또는 불변구매력단위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 ④ 재무자본유지개념과 실물자본유지개념의 주된 차이는 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가격변동 영향의 처리방법에 있다.
- ⑤ 자본유지개념은 이익이 측정되는 준거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자본개념과 이익개념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47. 유동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의 일부를 도난당했다.
- ㄴ. 1년 만기 어음을 발행하여 영업용 차량운반구를 취득하였다.
- ㄷ. 사용 중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차입하였다.
- ㄹ. 만기가 도래하기 전 사채를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 ㅁ. 주식을 발행하고 전액 현금으로 납입받았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ㄷ, ㅁ

48.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 ②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있다.
- ③ 무형자산에 대한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무형자산 원가는 현금가격상당액이 된다.
- ④ 제조과정에서 무형자산을 사용하면 수익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제조원가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
- ⑤ 특정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기계장치의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그 소프트웨어는 기계장치의 일부로 회계처리한다.

49.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 ② 제삼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 이행할 전체 의무 중 제삼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 ③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한 항목에 대해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 ④ 우발자산이란 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을 말한다.
- ⑤ 기업은 관련 상황의 변화가 적절하게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발자산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50.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본금은 발행된 주식의 액면금액 합계를 의미하므로, 기업이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자본금의 변동은 없다.
- ② 자본총액은 그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 또는 순자산을 나누어서 처분하거나 기업 전체로 처분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③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이다.
- ④ 무상증자나 무상감자(형식적 감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본총계는 변하지 않는다.
- ⑤ 자본은 자산 및 부채와 함께 재무상태의 측정에 직접 관련되는 요소이다.

51. 회계추정의 변경은 당기손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당기손익뿐만 아니라 미래기간의 손익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다음과 같은 회계추정의 변경 중 그 변경효과가 당기손익뿐만 아니라 미래기간의 손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매출채권의 대손에 대한 추정의 변경
- 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추정내용연수의 변경
- ㄷ.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기대소비 형태 변경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5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주)관세의 기말 매출채권 잔액은?

- 기초 매출채권은 ₩10,000이고, 당기 매출채권 현금회수액은 ₩40,000이며, 당기 현금매출액은 ₩7,000이다.
- 기초와 기말의 상품재고액은 각각 ₩16,000과 ₩22,000이며, 당기상품매입액은 ₩32,000이다.
- 당기 매출총이익은 ₩13,000이다.

- ① ₩0                      ② ₩1,000                      ③ ₩2,000                      ④ ₩22,000                      ⑤ ₩35,000

53. (주)관세의 20×1년의 기초 미지급사채이자는 ₩220이고, 기말 미지급사채이자 ₩250이다. 20×1년도 사채이자비용이 ₩6,000(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400 포함)이라면, (주)관세가 20×1년에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액은?

- ① ₩5,030                      ② ₩5,200                      ③ ₩5,570                      ④ ₩5,970                      ⑤ ₩6,000

54. (주)관세의 20×1년 1월 1일 보통주자본금은 ₩150,000(주당 액면금액 ₩500, 주식수 300주)이며, 자기주식은 ₩100,000(주당 취득금액 ₩1,000)이다. (주)관세는 20×1년 7월 1일에 보유중인 자기주식 중 50주를 주당 ₩1,500에 처분하였다. (주)관세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이 ₩720,000인 경우, (주)관세의 20×1년도 기본주당이익은? (단, 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 계산한다.)

- ① ₩2,400                      ② ₩3,200                      ③ ₩3,300                      ④ ₩3,360                      ⑤ ₩3,600

55. 유형자산과 관련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유형자산 금액은? (단, 각 항목들은 상호 독립적이다.)

○ 구입한 토지 위에 있는 구건물 철거비용	₩1,500,000
○ 토지의 취득세	600,000
○ 토지의 재산세	600,000
○ 공장설비 설치시 발생한 시운전비	2,000,000
○ 구축물의 내용연수 종료 후 발생할 복구원가의 현재가치	300,000
○ 신축건물 특정차입금의 자본화 차입원가	200,000
○ 지금까지 본사건물로 사용해 오던 건물의 철거비용	1,000,000
○ 철거당시 본사건물의 미상각장부금액	5,000,000
○ 중고자동차 취득시 정상적 운영을 위해 지출한 수리비용	300,000

- ① ₩2,900,000    ② ₩3,400,000    ③ ₩4,600,000    ④ ₩4,900,000    ⑤ ₩5,500,000

56. 20×1년 초에 설립된 (주)관세의 20×1년도 법인세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관세가 20×1년도에 인식할 법인세비용은? (단,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은 높다.)

○ 20×1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00,000
○ 20×1년도 세무조정 결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로 인한 차감할 일시적 차이: ₩200,000
○ 20×1년도 법인세율: 25%
○ 세법개정으로 인한 20×2년도와 그 이후의 법인세율: 35%

- ① ₩200,000    ② ₩230,000    ③ ₩250,000    ④ ₩350,000    ⑤ ₩370,000



59. (주)관세는 20×1년 1월 1일 공장 신축을 위하여 (주)한국건설과 건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건설기간은 20×1년 1월 1일부터 20×3년 6월 30일까지이다. (주)관세는 동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20×1년 1월 1일에 ₩6,000,000을 지출하였다. (주)관세가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동 공장 신축에 사용하는 일반차입금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입금액	차입일	상환일	연 이자율 및 이자지급조건
₩5,000,000	20×0년 1월 1일	20×2년 12월 31일	10%, 매년 말 지급

한편 (주)관세는 20×1년 1월 1일 금융기관으로부터 동 공장 신축을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3년 만기 조건(연 이자율 10%, 매년 말 지급)의 자금을 차입(특정차입금)하고 동 일자에 동 공장 신축에 전액 지출하였다. (주)관세가 20×1년도에 일반차입금과 관련하여 자본화한 차입원가가 ₩400,000이라면, (주)관세가 20×1년 1월 1일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특정차입금은?

- ① ₩1,200,000    ② ₩1,400,000    ③ ₩1,600,000    ④ ₩1,800,000    ⑤ ₩2,000,000

60. 다음은 20×1년 초에 설립하여 단일 품목의 상품을 판매하는 (주)관세의 20×1년 말 상품재고에 관한 자료이다.

장부상재고	실지재고	단위당 취득원가	단위당 확정판매계약가격	단위당 예상판매가격
100단위	100단위	₩700	₩690	₩750

위 상품 중 40단위는 취소불능의 확정판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 중인 재고자산이다. 확정판매계약을 맺은 상품의 경우에는 판매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나머지 상품의 경우에는 단위당 ₩80의 판매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관세가 동 상품과 관련하여 20×1년도에 인식할 재고자산평가 손실은?

- ① ₩1,800    ② ₩2,200    ③ ₩2,800    ④ ₩3,600    ⑤ ₩5,400

61. (주)관세는 20×1년 초에 본사건물을 ₩2,000,000에 취득(정액법 상각,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음)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말 공정가치로 재평가한다. 한편 본사건물의 20×1년 말 공정가치는 ₩1,800,000이며, 20×2년 말 공정가치는 ₩1,050,000이다. 동 본사건물과 관련된 회계처리가 (주)관세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① ₩200,000 감소                      ② ₩350,000 감소                      ③ ₩400,000 감소  
 ④ ₩550,000 감소                      ⑤ ₩600,000 감소

62. (주)관세는 20×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채를 발행하여 만기에 상환할 예정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동 사채는 상각후원가로 후속 측정하는 금융부채이다. 또한 다음의 현가계수를 이용하며, 계산시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액면금액: ₩1,000,000  
 ○ 표시이자율: 연 7%(이자선 매년 말 지급)  
 ○ 발행시점의 유효이자율: 연 10%  
 ○ 만기: 4년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7%	10%	7%	10%
1	0.9346	0.9091	0.9346	0.9091
2	0.8734	0.8264	1.8080	1.7355
3	0.8163	0.7513	2.6243	2.4868
4	0.7629	0.6830	3.3872	3.1699

- ① 20×1년 초 사채의 발행금액은 ₩904,893이다.  
 ② 20×1년 말 사채의 장부금액은 ₩925,382이다.  
 ③ 20×1년도에 인식하는 이자비용은 ₩90,489이다.  
 ④ 20×2년도에 인식하는 이자비용은 ₩92,538이다.  
 ⑤ 20×3년도에 인식하는 이자비용은 ₩95,792이다.

63. (주)관세는 20×1년 초 건물을 ₩480,000에 취득(정액법 상각,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없음)하여 사용하던 중 20×4년 9월 말 ₩130,000에 처분하였다. (주)관세는 20×3년 초에 동 건물의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을 변경하여 내용연수를 당초보다 1년 연장하였으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에 대한 변경은 없었다. (주)관세가 20×4년 9월 말 상기 건물의 처분시점에 인식할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단, 감가상각비는 월할 계산한다.)

- ① ₩0                    ② ₩18,000            ③ ₩24,000            ④ ₩30,000            ⑤ ₩50,000

64. 다음은 (주)관세의 20×1년 발생 거래내역이다. 다음 거래의 결과로 증가되는 (주)관세의 자본총액은?

- 3월 10일: 주당 액면금액 ₩1,000의 자기주식 100주를 주당 ₩3,000에 취득하였다.
- 6월 30일: 3월 10일에 취득한 자기주식 중 50주를 주당 ₩3,600에 처분하였다.
- 10월 13일: 3월 10일에 취득한 자기주식 중 50주를 소각하였다.
- 11월 30일: 주당 액면금액 ₩1,000의 보통주 50주를 주당 ₩4,000에 발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주식발행비 ₩35,000을 지출하였다.
- 12월 31일: ₩200,000의 당기순이익과 ₩130,000의 기타포괄이익을 보고하였다.

- ① ₩260,000            ② ₩375,000            ③ ₩410,000            ④ ₩710,000            ⑤ ₩1,010,000

65. (주)관세는 20×1년도의 결산과정에서 다음의 중요한 오류를 발견하였다.

- 20×0년과 20×1년의 기말재고자산을 각각 ₩8,000과 ₩3,000 과소계상하였다.
- 20×1년 초에 연구비(당기비용)로 처리하여야 할 지출액 ₩20,000을 모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1년 간의 무형자산상각비(당기비용)로 ₩4,000을 인식하였다.

20×1년도의 오류수정 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500,000인 경우, 오류수정 후 (주)관세의 20×1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단, (주)관세의 20×1년도 장부는 아직 마감되지 않았고, 재고자산에 대한 장부기록방법으로 실지재고조사법을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 ① ₩472,000      ② ₩476,000      ③ ₩479,000      ④ ₩516,000      ⑤ ₩521,000

66. 전자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20×0년에 설립된 (주)관세는 20×0년과 20×1년에 각각 ₩200,000과 ₩300,000의 매출액(3년 간 무상수리 조건임)을 인식하였다. (주)관세는 매출액의 5%를 품질보증비용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관세가 판매한 제품의 품질보증(무상수리)을 위해 20×0년과 20×1년에 각각 ₩3,000과 ₩6,000을 지출하였을 때, 제품매출과 관련하여 (주)관세가 20×1년에 인식할 품질보증비용은? (단, 상기 품질보증은 확신 유형의 보증으로서 보증활동 자체가 제품판매와 구분되는 수익창출활동은 아니다. 또한 총당부채의 측정 시 화폐의 시간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6,000      ② ₩11,000      ③ ₩15,000      ④ ₩16,000      ⑤ ₩17,000

67. (주)관세의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주)관세는 20×1년 1월 1일 영업부서에 근무하는 종업원 50명에게 각각 10개의 주식선택권(개당 ₩1,000에 (주)관세의 주식 1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하고, 2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였다. 20×1년 1월 1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개당 공정가치는 ₩500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주)관세는 20×1년 말에 가득기간 동안 종업원 중 10%가 퇴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 ① 주식기준보상의 측정기준일은 20×3년 1월 1일이다.
- ② 주식기준보상의 가득기간은 20×1년 1월 1일부터 20×2년 12월 31일까지이다.
- ③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하여 (주)관세가 인식할 20×1년도 주식보상비용은 ₩112,500이다.
- ④ 주식기준보상의 부여일은 20×1년 1월 1일이다.
- ⑤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유형 중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한다.

68. 다음은 (주)관세의 20×1년과 20×2년의 요약 재무상태표 정보이다.

	20×1년 말	20×2년 말
유동자산	₩100,000	₩300,000
비유동자산	400,000	500,000
자산총계	₩500,000	₩800,000
유동부채	₩80,000	₩120,000
비유동부채	45,000	305,000
부채총계	₩125,000	₩425,000
자본총계	₩375,000	₩375,000
부채와 자본총계	₩500,000	₩800,000

(주)관세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이 ₩168,750이라면, 20×2년도 자기자본이익률과 20×2년 말의 유동비율은?

- |   | <u>자기자본이익률</u> | <u>유동비율</u> |   | <u>자기자본이익률</u> | <u>유동비율</u> |
|---|----------------|-------------|---|----------------|-------------|
| ① | 26%            | 40%         | ② | 26%            | 250%        |
| ③ | 45%            | 40%         | ④ | 45%            | 250%        |
| ⑤ | 50%            | 150%        |   |                |             |

69. (주)관세는 (주)대한의 지분 100%를 현금으로 인수(사업결합)하였는데, 인수일 현재 (주)대한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장부금액	공정가치
현금	₩200,000	₩200,000
재고자산	500,000	200,000
유형자산	600,000	1,000,000
특허권	-	100,000
유동부채	100,000	100,000
순자산	₩1,200,000	₩1,400,000

- ① ₩3,000,000에 인수하였다면 인식하는 자산총액은 ₩3,100,000이다.
- ② ₩400,000에 인수하였다면 인식하는 영업차익은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 ③ ₩400,000에 인수하였다면 인식하는 자산총액은 ₩1,500,000이다.
- ④ ₩400,000에 인수하면서 인식하는 무형자산의 금액은 ₩3,000,000에 인수하면서 인식하는 무형자산의 금액과 달라지게 된다.
- ⑤ ₩3,000,000에 인수하였다면 인식하는 영업권은 ₩1,700,000이다.

70.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관세의 20×1년 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700,000이다. (주)관세가 20×1년에 인식한 당기근무원가는 ₩150,000이며, 20×1년에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된 퇴직급여는 ₩90,000이다. 한편 (주)관세가 확정급여채무 계산 시 적용한 20×1년 초 할인율은 연 10%이다. 20×1년 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850,000일 경우, (주)관세가 20×1년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손익(재측정요소)은? (단, 모든 거래는 연도 말에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

- ① 손실 ₩90,000                      ② 손실 ₩70,000                      ③ 손실 ₩20,000
- ④ 이익 ₩20,000                      ⑤ 이익 ₩90,000

71. 20×1년 (주)관세의 제조와 관련된 원가가 다음과 같을 때 직접노무원가는?

당기제품제조원가	₩1,400,000
기본원가(prime cost)	1,200,000
가공원가(전환원가)	1,100,000
기초재공품	100,000
기말재공품	200,000

- ① ₩400,000    ② ₩500,000    ③ ₩600,000    ④ ₩800,000    ⑤ ₩900,000

72. 당해 연도에 설립된 (주)관세는 당기에 제품 1,000개를 생산하여 800개를 판매하였다. 이 과정에서 판매비인 화재보험료를 제조간접원가로 처리하였다. 화재보험료를 판매비로 회계처리한 경우와 비교하여 동 회계처리가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 ① 매출총이익은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감소한다.  
 ② 매출총이익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한다.  
 ③ 매출총이익과 영업이익이 모두 변하지 않는다.  
 ④ 매출총이익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한다.  
 ⑤ 매출총이익은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증가한다.

73. (주)관세는 제조간접원가를 직접노동시간에 따라 예정배부한다. 20×1년 예산 및 동년 3월의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3월의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은?

연간 직접노동시간(예산)	3,700시간
연간 제조간접원가(예산)	₩192,400
3월 직접노동시간(실제)	450시간
3월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1,300(과대배부)

- ① ₩21,200    ② ₩22,100    ③ ₩23,200    ④ ₩23,400    ⑤ ₩24,700

74. (주)관세는 균등이익률법을 적용하여 결합원가계산을 하고 있다. 당기에 결합 제품A와 B를 생산하였고, 균등매출총이익률은 30%이다.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결합제품A에 배부되는 결합원가는? (단, 재공품 재고는 없다.)

제품	생산량	판매가격(단위당)	추가가공원가(총액)
A	300단위	₩30	₩2,100
B	320단위	25	3,200

- ① ₩2,400      ② ₩3,200      ③ ₩3,800      ④ ₩4,200      ⑤ ₩5,100

75. 책임회계와 성과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책임회계(responsibility accounting)의 평가지표는 각 책임단위가 통제할 수 있는 결과를 이용하며, 이를 통제가능성의 원칙(controllability principle)이라고 한다.
- ② 투자책임단위(investment center)의 경영자는 얼마의 금액을 투자해서 이익을 얼마나 창출했는지에 의하여 성과평가를 받아야하므로 이익과 투자액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바람직한 성과지표는 잔여이익(RI), 경제적부가가치(EVA), 투자 수익율(ROI) 등이다.
- ③ 균형성과표(BSC)는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통적인 재무적 지표 이외에 다양한 관점의 성과지표가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균형성과표(BSC)의 내부 프로세스 관점은 기존의 프로세스와 제품에 만족하지 않고 기술 및 제품의 혁신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종업원 만족도, 종업원 이직률 등의 지표가 이용된다.
- ⑤ 균형성과표(BSC)에서 고객의 관점은 고객만족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데 고객 만족도, 고객확보율, 반복구매정도 등의 지표가 사용된다.

76. (주)관세는 가중평균법을 적용하여 종합원가계산을 하고 있다. 가공원가는 공정의 완성도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하며, 검사는 가공원가(전환원가) 완성도 60%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정상공손수량이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5%일 때 당기의 정상공손수량은?

기초재공품 수량	260단위(완성도 70%)
당기 완성품 수량	1,360단위
기말재공품 수량	300단위(완성도 80%)
공손수량	140단위

- ① 55단위      ② 68단위      ③ 70단위      ④ 81단위      ⑤ 83단위

77. (주)관세의 20×1년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매출액	₩50,000
변동원가	30,000
공헌이익	20,000
고정원가	15,000
영업이익	5,000

- ① 공헌이익률은 60%이다.  
 ② 안전한계율(margin of safety percentage)은 30%이다.  
 ③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40,000이다.  
 ④ 영업레버리지도는 5이다.  
 ⑤ 판매량이 10% 증가하면 영업이익은 ₩2,000 증가한다.

78. (주)관세는 20×1년의 분기별 현금예산을 편성 중이며, 관련 매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예상 매출액	₩250,000	₩300,000	₩200,000	₩275,000

분기별 예상 매출액 중 현금매출은 40%이며, 외상매출은 60%이다. 외상매출은 판매된 분기(첫 번째 분기)에 60%, 두 번째 분기에 30%, 세 번째 분기에 10%가 현금으로 회수된다. 20×1년 매출과 관련하여 3분기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액은?

- ① ₩152,000      ② ₩206,000      ③ ₩218,000      ④ ₩221,000      ⑤ ₩267,000

79. (주)관세는 제품A와 B, C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며, 20×1년의 예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A	제품B	제품C	합계
매출액	₩900,000	₩2,250,000	₩1,350,000	₩4,500,000
변동원가	540,000	1,125,000	810,000	2,475,000
고정원가	₩810,000			

예산 매출배합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제품A의 연간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 ① ₩360,000      ② ₩380,000      ③ ₩400,000      ④ ₩405,000      ⑤ ₩540,000

80. (주)관세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20×1년 제품 2,000단위를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에 대한 표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text{제조간접원가예산} = \text{₩}720,000 + \text{직접노동시간} \times \text{₩}100$$

제품단위당 표준직접노동시간 5시간

20×1년 실제직접노동시간은 20,400시간이고, 실제생산량은 4,000단위이다.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와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는?

- | <u>능률차이</u>   | <u>조업도차이</u>   |
|---------------|----------------|
| ① ₩40,000(불리) | ₩720,000(유리)   |
| ② ₩40,000(유리) | ₩720,000(불리)   |
| ③ ₩40,000(불리) | ₩1,280,000(유리) |
| ④ ₩40,000(유리) | ₩1,280,000(불리) |
| ⑤ 차이 없음       | ₩1,280,000(불리) |